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9월 22일, 허은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3년 9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3.

12. 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3.

12. 6.)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3.

12. 8.)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허은아의원)

현행법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해당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이므로 해당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1)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의 거짓표시로 인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서 과기정통부 소관 업무에 해당함.

○ 그런데 동법 제104조제6항2)에 따르면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한 과

1)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생략)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2.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제104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생략)

6.제84조의2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생략)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5항제2호의2·제4호의2·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

태료(5천만원 이하) 부과·징수권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 되어있는
바, 개정안은 이를 과기정통부장관으로 정정하려는 것임.

- 본래 2022년 6월 10일 개정 이전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법
제84조의2제3항 위반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도록 하고 있었으며, 부과·징수권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 그런데 2022년 6월 10일 법률 개정 당시 과태료 부과금액을 5천
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 법체
계상 오류가 발생한 것임.
-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승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개정안의 내용을 수
정하여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가 부과·징수하고, 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며,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